

장:(200)사회개발비 관:(2300)사회보장비

항:(2320)여성정책

세항:(2321)여성정책관리

세세항:(210)보조사업

[세출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	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국	도	지	기	교
2000	사회개발비	3,810,639	3,590,599	220,040	[국 37,536 [양 0	도 △4,185 기 186,689	지 0 교 0		
2300	사회보장비	3,810,639	3,590,599	220,040	[국 37,536 [양 0	도 △4,185 기 186,689	지 0 교 0		
2320	여성정책	3,810,639	3,590,599	220,040	[국 37,536 [양 0	도 △4,185 기 186,689	지 0 교 0		
2321	여성정책관리	3,810,639	3,590,599	220,040	[국 37,536 [양 0	도 △4,185 기 186,689	지 0 교 0		
200	사업예산	3,715,859	3,495,819	220,040	[국 37,536 [양 0	도 △4,185 기 186,689	지 0 교 0		
210	보조사업	2,053,398	1,833,358	220,040	[국 37,536 [양 0	도 △4,185 기 186,689	지 0 교 0		
	307 민간이전	23,375	13,375	10,000					
		23,375	13,375	10,000		02 민간경상보조 ○지방의회 인턴사업 (성립전예산)		=	10,000
							(기)		10,000
	308 자치단체등 이전	1,992,758	1,782,718	210,040					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1,992,758	1,782,718	210,040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
					○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
					(국3,054,000원 + 도1,526,000원) - 6,108,000원 = △1,528
					(국) △1,018
					(도) △510
					○성폭력피해자 치료비
					(국9,075,000원 + 도4,538,000원) - 18,153,000원 = △4,540
					(국) △3,027
					(도) △1,513
					○선도보호시설 운영
					(국125,867,000원 + 도26,972,000원) - 162,185,000원 = △9,346
					(국) △7,697
					(도) △1,649
					○여성폭력종사자 교육
					(국7,554,000원 + 도3,777,000원) - 9,450,000원 = 1,881
					(국) 1,254
					(도) 627
					○가정폭력 행위자 교정·치료 (성립전예산) = 92,005
					(기) 92,005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가정·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(성립전예산)
					= 75,684
					(기) 75,684
					○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(성립전예산)
					= 9,000
					(기) 9,000
					○여성인력 개발센터 운영
					(국342,829,000원 + 도67,800,000원) - 376,029,000원
					= 34,600
					(국) 34,600
					○저소득 모자가정지원
					(국313,520,000원 + 도39,190,000원) - 319,167,000원
					= 33,543
					(국) 29,816
					(도) 3,727
					○저소득 부자가정지원
					(국65,127,000원 + 도8,141,000원) - 66,258,000원
					= 7,010
					(국) 6,231
					(도) 779
					○모자보호시설 운영 (3개소)
					(국178,908,000원 + 도38,338,000원) - 241,324,000원
					= △24,078
					(국) △19,829

장:(200)사회개발비 관:(2300)사회보장비

항:(2320)여성정책

세항:(2321)여성정책관리

세세항:(210)보조사업

[세출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도) △4,249
					○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집 운영 (국27,936,000원 + 도13,968,000원) - 46,095,000원
					= △4,191
					(국) △2,794
					(도) △1,397
세 출 합 계		3,810,639	3,590,599	220,040	